#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8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김상훈·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유영하·유용원 윤상현·윤영석·윤재옥 윤한홍·이달희·이만희 이상휘·이성권·이양수 이인선·이종배·이종욱 이철규·이헌승·인요한 임이자·임종득·장동혁 정동만·정성국·정연욱 정점식·정희용·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은희 조정훈·조지연·주진우 주호영·진종오·최보윤 최수진·최은석·최형두 의원(108인)

# 제안이유

그간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음.

또한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역시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균 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
- 다. 이 법은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실태조사 등 의 근거를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세제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2. "지방"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에 포함한다.
- 3. "지방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도권 중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

- 4. "지방기업"이란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5. "지방근로자"란 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지방기업이 소재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6.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를 말한다.
- 7. "기회발전특구 근로자"란 기회발전특구의 지방투자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8. "특구개발사업"이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 9.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란 제8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10.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투자 촉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2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 제5조(지방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장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8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 ① 지방에 소재하는 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
  -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자유무역지역

-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 신도시
- 9.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 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 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 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4.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 6.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 명칭 · 위치 및 범위
- 2.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계획
-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의 특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지정변경 및 지정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정변경 및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 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이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조성하려는 자는 출자금 총액, 출자지분비율,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회 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 제11조(기회발전특구의 조성·운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자의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실시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회발전특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회발전특구 내 규제특례)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 적용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특례(이하 "기회발전특구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를 신청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투구특례 부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 기회발전특구특례 부여의 필요성 및 적정성
- 2. 기회발전특구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 경제적 효과
- 3. 기회발전특구 내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 4.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 기회발전특구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대상이 법률에 규정된 규제인 경우에는 그 근거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근거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해당 법률의 개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⑦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유효기간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으로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한

-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외에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기회발전특구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제13조제5 항에 따라 부여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고, 기 회발전특구 내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 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 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유효기간 내라도 기회발전특구특례와 관련하여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즉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발전특구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 2.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제13조제9항에 따른 부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지방투자의 유치·촉진 지원 등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기회발전특구특례의 부여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관할 시· 도지사는 즉시 기회발전특구특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기업 또는 지 방근로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따라 기 회발전특구특례의 적용을 즉시 중단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하 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기회발전특구특례의 관리·감독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투구 내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격기준,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시 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